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우리사주조합원 자격범위 확대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84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우리사주조합원 자격범위 확대	2

I. 제안경위

2025년 4월 24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예외로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진은 우리사주제도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경영진의 자동 배제는 우리사주에 대한 임원의 관심을 감소시키고, 우리사주제도의 핵심 가치인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우리사주제도에 관심 제고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Ⅲ. 검토의견

1. 우리사주조합원 자격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도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u>근로자</u>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u>근로자</u>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 ----- ----- <u>사람은</u> ----- --. 1. ----- - <u>근로자 및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및 그 주주의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등”이라 한다)</u> 2. ----- -----

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가. ~ 다. (생략)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

----갖춘 근로자등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다음-----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단서 삭제>

<삭제>

<u>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 된 사람</u> 2. ~ 4. (생략) ③ (생략) ④ <u>근로자의</u> 소속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u>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u>의 <u>우리사주조합원</u>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u>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u>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u>우리사주</u> <u>매수선택권</u>에 한정하여 변경 전 <u>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u>의 <u>우리사</u> <u>주조합</u>의 <u>우리사주조합원</u> 자격을 유지한다. 1. · 2.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근로자등의</u>-----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기업성과 공유, 노사 간 협력 증진, 조직 내 공동체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조합조직으로,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주식을 일괄 취득·보관·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조합원에 관해 현행법은 해당 회사의 소속 근로자¹⁾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1) 지배관계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실시회사로부터 직전 연도 연간 매출의 50% 이상을 수급받는 회사로 외주업체 등을 말함)의 근로자도 포함됨.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²⁾,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진은 우리사주제도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우리사주 활성화에 대한 기업 내 책임감 있는 임원이 감소하고, 우리사주제도의 핵심 가치인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포함) 경영진에게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주어 경영진도 경제 공동체 일원으로서 성과를 공유하고, 조직 내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이 우리사주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임원을 배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첫째, 우리사주제도는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협력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현행법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³⁾, 우리사주에 관한 세제혜택⁴⁾ 등의 제도적 지원

2) 예외로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3)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같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장치를 두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임원보다 소득·지위가 열악한 ‘근로자’의 사주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장치로 볼 것임.

따라서 근로자를 위해 설계된 우리사주제도 정책지원을 등기임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당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우리사주조합의 독립성·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진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회사 경영권이 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쳐 우리사주조합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경영진과 조합 간 이해관계 상충 시 경영진이 조합원으로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⁵⁾가 있음.

셋째,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⁶⁾ 위반이나 「상법」상

② 제1항의 법인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5) 가령, 조합장 선거 시 조합원들이 인사·평가권을 가진 경영진의 영향을 받아 자유투표가 어려워지거나, 경영진이 조합장인 경우 조합이 회사 경영진에 우호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

경영진의 충실 의무⁷⁾ 저촉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으로, 임원은 회사의 주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알 수 있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매도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가 발생할 우려⁸⁾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임원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은 제도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제도 취지 부합 여부 및 타법과의 충돌 우려, 보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⁹⁾.

한편, 관계부처 의견으로서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의 독립성을 침해 및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거래규제 위반이나 상법상 경영진의 충실 의무 저촉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하 생략)

- 7)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8) 사업계획, 실적, 주가 영향 정보 등이 미공개된 상태에서 내부정보를 근거로 우리사주의 배정시기, 물량, 가격 등을 조정하는 경우 등
- 9) 참고로, 미국에서 운영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의 경우, 임원도 연령, 근속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임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ESOP가 직원의 장기적 자산 형성(퇴직연금적 성격) 및 은퇴 대비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ESOP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와 달리 자사주 취득에 있어 우선배정제가 없으며, ESOP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세제지원(과세이연)을 통해 퇴직 시까지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사주조합과 달리 신탁구조로 운영되는 ESOP운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음(“우리사주제도(ESOP)의 성공조건”, LG경영연구원, 최수미, 2003.5.)

법무부는 우리사주제도의 본질이 임금(노동)에만 의존하고 다른 수입원이 없는 근로자와 자본가 사이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우리사주조합원에 사용자(「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9